

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2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10월 17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여성폭력의 예방·방지 및 피해자 보호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된 ‘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’의 위원 성별구성기준, 위원장 직무, 의사 및 의결정족수 등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,
- 나. 가정폭력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자립·자활 지원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(안 제7조제3항)
- 나. 위원 연임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, 위촉 해제사유를 명확히 명시함(안 제8조 및 제9조)
- 다.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,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 및 제11조)
- 라.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자립을 위한 지원서비스 사항을 규정함(안 제14조의3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,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협의 완료

다. 기타

(1) 입법예고 (2022. 4. 14. ~ 5. 4.) 결과 : 의견없음

(2) 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촉한다”를 “위촉하되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12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하고,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며,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.

제11조의2를 제14조의2로 한다.

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

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9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
2.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3.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
4.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
5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(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)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종전의 제8조)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중전의 제9조)제2항 중 “권익보호담당관”을 “양성평등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3(가정폭력피해자 지원) 시장은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의 적정한 보호 및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사업
2.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료 보조사업
3.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립지원금 지원
4. 단계적 사회적응을 위한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사업
5.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자녀 양육 및 가사지원사업
6.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은 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<u>위촉한다</u>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④ <u>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/u></p> <p>⑤ <u>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위촉하되, <u>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제8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<u>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</u></p>

<신 설>

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
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
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9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
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
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
한 경우

2.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
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
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
경우

3.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
계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
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
우

4.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
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
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
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
경우

5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
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
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
는 경우

<신 설>

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

제8조(회의) (생략)

<신설>

제9조(간사) ① (생략)

② 간사는 여성폭력 예방과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권익보호담당관으로 한다.

③ (생략)

제10조 ~ 제11조의2 (생략)

<신설>

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회의) ① (현행 제6조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간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양성평등담당관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3조 ~ 제14조의2 (현행 제10조부터 제11조의2까지와 같음)

제14조의3(가정폭력피해자 지원)
시장은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의 적정한 보호 및 자립을 위하

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사업

2.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료 보조사업

3.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립 지원금 지원

4. 단계적 사회적응을 위한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사업

5.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자녀양육 및 가사지원사업

6.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
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

제12조 ~ 제22조 (생략)

제15조 ~ 제25조 (현행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와 같음)

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민간 임대주택 임차료(월세)지원
-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추가 지원
- 가사도우미 파견을 통한 가사지원 서비스
-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

4. 작성자

-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임기제7급 윤나래(2133-8698)